

경제관계장관회의 결
성장전략 TF
26-3-3
(공개)

KS 인증제도 개편방안

2026. 2. 4.

관 계 부 처 합 동

순서

I. 검토 배경	1
II. KS인증 문제점 및 개선방향	3
III. 추진 방안	5

□ 60여년간 유지된 단일심사방식의 KS인증제도

- 1961년 「공업표준화법」에서 KS인증제도 도입 이래, 지난 60여년간 공장 중심의 품질관리 KS인증 심사방식*은 변화없이 유지

* 「제품심사+공장심사」를 통해 공장단위로 「KS 인증서 발급」

□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

- 최근 로봇 등 첨단산업 제품은 전통제조업과 달리 다양한 방식으로 제조
 - 공장 중심의 “소품종·대량생산”에서 OEM 등 “다품종·소량생산 방식”으로의 변화 가속화



□ 공급망 재편 및 우회수출 증가

- 美 상호관세 부과 및 미·중 경쟁에 따른 공급망 재편 가속화

- 중국산 등 저가 제조품 국내 우회 수출은 우리기업의 생존*을 위협

* ('25.6.2., 한국경제보도) 中 제품 우회수출경로 우려, 韓 철강 생존 몸부림

- 국내시장을 겨냥한 저가 불법·불량 제품 유통*으로 소비자 피해 우려

* 연간 불량·불법제품 적발율 : ('22)30.7% → ('23)42.4% → ('24)26.2% → ('25)24.1%

60년 품질 견인에 이어 **유연하고 신뢰성 있는 국가대표 인증으로 개편 필요**

○ (정의) KS 수준 이상의 제품을 안정적·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‘공장*’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법정 임의인증

* 「산업표준화법」 제15조(제품의인증) : (앞부분 생략) ~를 제조하는 자는 **공장 또는 사업장**마다 (중략) 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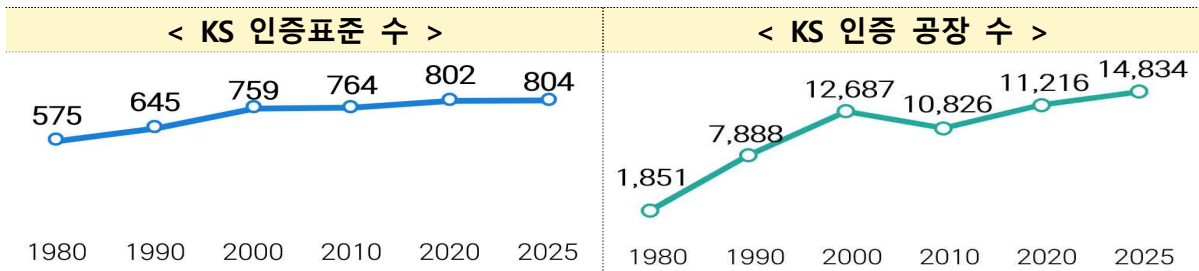
○ (도입) 61년 「공업표준화법(현 산업표준화법)」 제정으로 도입되어 63년 백열전구(現 금호전기)에 첫 KS 인증서 발급

< KS 인증제도 주요 변천사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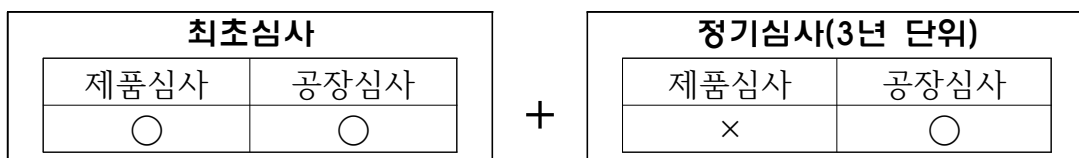
1 단계	2 단계	3 단계	4 단계	5 단계
1960~1970	1971~1980	1981~1990	1991~2000	2001~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1961년 공업표준화법 제정 ▶ 1962년 KS표시제도 시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1971년 공업표준화법 개정 ▶ 1973년 공업진흥청 설립 (現 국가기술표준원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1988년 민간주도형 공산품 품질관리로 확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1993년 산업표준화법으로 개정 ▶ 1998년 KS 인증업무 이관 (정부→한국표준협회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015년 범부처 참여형 전환 (산업부→농림부 등 5개부처) 인증기관 복수화 (한국표준협회→現, 12개기관)

○ (KS) 총 22,513종 운용, 이 중 KS 인증표준은 804종

○ (인증공장) 인증을 취득한 공장 수는 14,834개



○ (심사방식) 최초 인증을 받을 때 공장심사 + 제품심사, 이후 3년마다 공장심사를 받는 방식으로 모든 품목에 동일하게 적용



* 기업의 인증유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정기심사에서 제품심사 폐지('15.7월~)

II

KS인증 문제점 및 개선방향

1 획일적인 KS인증 →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부적합

- 다품종 소량 생산제품으로 패러다임 변화 → 現 대량생산 중심의 인증심사 방식은 신제품 상용화 지원에 한계

사례 1 착용형 로봇, 실내 안내로봇 등 OEM 생산방식의 제품설계 기업은 공장 미보유로 공장심사 적용 불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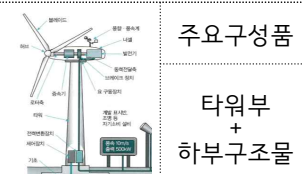
* (25.6.12.) 현대차, 삼성전자 등 10개 로봇업체 간담회 시 제조자가 아닌 개발자(설계기업)도 KS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인증체계 개편 요구

사례 2 주차로봇, 구조드론 등 공장이 없거나 공장이 있어도 시장 예측이 어려워 까다로운 공장심사 요건을 갖추기 쉽지않은 혁신제품 사업자는 KS인증 취득 애로

⇒ (개선방향)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맞게 인증방식 다양화

- 풍력터빈 KS인증은 ‘주요구성품(블레이드 + 너셀(동력부)) + 타워’ 패키지로 구성 → 인증취득까지 시간과 비용 소모가 큰 편

사례 D사의 제품 WinDS5500/140 모델은 부품 및 타워부 변경에 따른 패키지 재인증 등으로 인증취득까지 2,097일 소요 (최근 5년 내 최대)



풍력터빈 KS인증

* (25.8.19.) 두산에너빌리티, 유니슨 등 터빈업체는 ‘주요구성품’ 인증 신설 요청

⇒ (개선방향) 타워부를 제외한 주요구성품 인증 신설

- 매 3년마다 정기심사를 통해 인증을 연장하도록 규정 → 비교적 짧은 기간 내 인증갱신은 업계에 비용, 시간 부담으로 작용
- * 「산업표준화법」제19조(정기심사 등), 제28조(산업표준화 교육)에 따라 인증을 받은자는 3년 이내에 정기심사를 받고,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함

⇒ (개선방향) 기업부담 해소를 위해 정기심사 주기 완화


2 불법불량 KS 제품 유통 증가 → 소비자, 기업 피해 확대

- 美 관세장벽에 따른 공급망 재편으로 우리나라 경유 우회 수출 증가
→ 불법업체의 원산지 변경 등으로 선량한 KS인증기업 타격

<p>사례 1</p>	<p>국내 A사(인증기업)는 중국과 인도에서 제품 140만개를 수입한 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바꿔 국내유통 및 수출</p> <p>※ (관세법) 관세청은 수입업자 의무인증 검사만 수행(KS는 미대상)</p>	 <p>'원전에도 쓰였는데 원산지 속인 한국프랜지' 원산지삭제 후 마킹하는 모습</p>
--------------------	--	---

⇒ (개선방향) 불법KS제품 수입차단을 위해 관세청과 통관단계 협업 추진


- 'KS인증 도용', '저품질 KS제품' 등 불법·불량 KS제품 증가 → KS인증기업은 물론 소비자에게도 피해

<p>사례 2</p>	<p>국내 B사(非인증기업)는 중국제품에 위조 KS 마크 부착 후 건설사에 납품</p> <p>※ (산표법) 인증도용 벌칙조항 有, 선제적 조사 규정 부재</p>	 <p>“순살 자이 GS건설...이번엔 가짜 KS마크 중국산 유리”</p>
--------------------	--	---

<p>사례 3</p>	<p>국내 C사(인증기업)는 시멘트 배합 비율을 조작해 KS 기준에 부적합한 레미콘 공급</p> <p>※ (산표법) 법적 처벌규정 부재로 인증취소 불가</p>	<p>“수도권 422곳 KS규격 미달 불량 레미콘 최근 세종·대전·청주·천안 등 아파트 공급 물량 ‘급증’ “압축강도 시험 등으로 ‘불량 레미콘’ 배합 조작 등 점검 필요”</p>
--------------------	---	--

⇒ (개선방향) 非 KS인증기업에 대해서도 조사권한을 신설하고, 고의로 불법 KS제품을 생산한 기업에 인증취소 처분 신설

- 연평균 30% 수준의 KS 부적합 제품 유통 → 인증 신뢰도 저하 우려

<p>현황 1</p>	<p>국표원은 연 630여건의 시판품조사를 수행 중이나, 늘어나는 인증기업 대비 조사건수는 부족한 편</p>	 <p>연간 시판품조사 대비 부적합률</p> <table border="1"> <tr> <th>연도</th> <th>부적합률</th> </tr> <tr> <td>2022</td> <td>30.7%</td> </tr> <tr> <td>2023</td> <td>42.4%</td> </tr> <tr> <td>2024</td> <td>26.2%</td> </tr> <tr> <td>2025</td> <td>24.1%</td> </tr> </table>	연도	부적합률	2022	30.7%	2023	42.4%	2024	26.2%	2025	24.1%
연도	부적합률											
2022	30.7%											
2023	42.4%											
2024	26.2%											
2025	24.1%											

* 최근3개년 조사건수/인증공장 : ('23)633/15,105 → ('24)631/15,430 → ('25)636/14,834

<p>현황 2</p>	<p>정부는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기업(1.5만개) 및 심사원(2천여명)을 관리하고 있으나, 전문성 및 관리 효율성 측면에서 역부족</p>
--------------------	--

⇒ (개선방향) 시판품 조사 효율성 제고 및 정부 역할 보완을 위해 불량 KS인증 제품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조직 운영

Ⅲ

추진 방안

1 新시장 창출 지원 및 규제완화

① 산업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인증방식 다양화

- 산업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공장심사 없는 심사방식을 신설하고, ‘제조사’에 국한된 인증 취득주체 확대(「산표법」 제17조 등 개정)
 - (심사방식) 제품심사, 단일제품심사 등 두가지 인증 심사방식 신설
 - (①제품심사) 최초심사 및 정기심사 시 제품심사만 시행
 - (②단일심사*) 유효기간이 정해진 단일 제품심사(정기심사 없음)
- * AI 융복합제품 등 빠른 트렌드 변화로 인증연장이 불필요한 제품의 신속 상용화 지원

< 심사방식 신설(안) >

구분	최초심사		정기심사		설 명	적용 품목(예)
	제품	공장	제품	공장		
현행	◎	◎	×	◎	공장심사+제품심사	現 KS인증 품목
↓						
신설①	◎	×	◎	×	제품심사만 시행 (최소 품질 요건 확인 병행)	다품종 소량 생산 제품 (착용로봇 등)
신설②	◎	×	×	×	최초 제품심사만 시행 (최소 품질 요건 확인 병행, 유효기간 4년)	

※ 다만, 최소품질요건 준수 및 ‘택갈이*’ 방지를 위해 생산공장 확인 등 제조공정을 점검하고, 추가로 집중 시판품조사 병행

* 타사제품(예, 중국산 저가)을 수입해서 상표나 겉포장만 교체하여 자사 브랜드로 판매하는 행위

- (취득주체)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 뿐 아니라 OEM 제조 방식을 채택한 설계자, 개발자 등도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취득주체 확대
 - (現) ‘공장을 보유한 제조자’ → (後) ‘개발자, 설계자’ 등 사업자 추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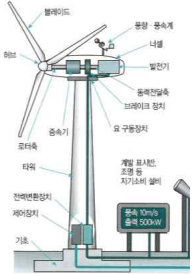
② 풍력발전 산업 진흥을 위한 맞춤형 인증 도입

□ 인증 취득 효율화, 국내 산업계 수요반영 등을 위해 국제적으로 활용 중인 IECRE*(신재생에너지 국제인증제도) RNA인증** 도입

○ (풍력인증) (現) 주요구성품+타워 제품인증 → (後) RNA인증 추가 운영

* IECRE : IEC certification system for Renewable Energy application

** RNA인증 : 타워를 제외한 주요품(Rotor Nacelle Assembly) 인증

개선	<p>KS인증 : 주요구성품(동력부+블레이드) + 타워부 인증</p>	
	<p>RNA인증 : 타워를 제외한 주요구성품 (동력부+블레이드) 인증</p>	

③ 업계부담 해소를 위해 KS인증 정기심사 주기 완화

□ KS인증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업계부담 해소를 위해 정기심사 및 정기교육 주기 완화(「산표법」 시행령 제30조, 시행규칙 제16조 등 개정)

○ (정기심사) 심사주기를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여, 인증 유지에 소요되는 인증심사 비용* 등 실질적 부담 저감

* 인증 평균비용 약 660만원 = 심사비(약 50만원) + 심사원 인건비(2인 국내기준 약 60만원) + 제품시험비용(품목별·시험항목별 상이, 약 500만원) 등 포함

○ (정기교육) 정기심사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는 정기교육* 주기 또한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여 교육비 및 시간부담 완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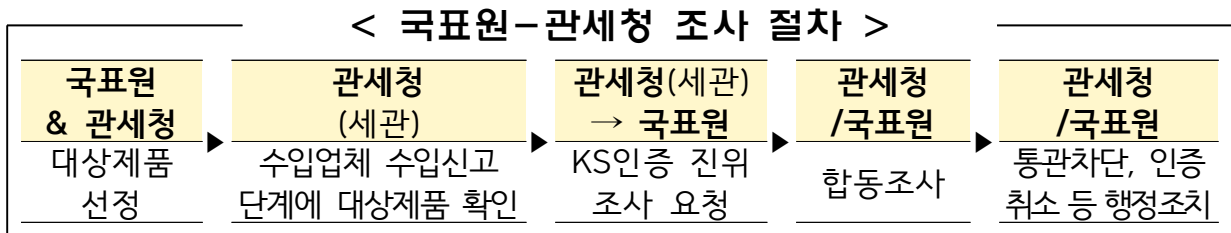
* 경영간부 및 품질관리담당자는 매3년마다 품질경영 교육을 16시간 이수

2 KS인증 신뢰성 확보

① 불법제품 유입 근절을 위한 국내유통 전 조사 강화

- (수입물품 집중단속) 불법·불량 KS제품 수입차단을 위해 관세청 협업을 강화하고, 원산지 변경 우려가 큰 제품*을 대상으로 집중단속 실시

* 철강제품, 스테인레스 플랜지 등 우회수출에 따른 사회적 이슈품목



- (시스템 연계) 수입신고 단계부터 주요 KS제품*에 대한 KS인증 진위 여부를 즉시 판단할 수 있도록 국표원-관세청 시스템 연계 추진

* KC인증을 KS인증으로 대체하는 LED조명, 케이블, 가구 등 138개 제품

② 시장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사후관리 규정 정비

- (조사권한 신설) 시중 KS 인증 도용 제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非 인증제품 사업자에 대한 조사권한 신설(「산표법」 제20조 개정)

현행	◇ KS인증제품에 대한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가능
신설	◇ 인증을 받지 않은 자가 인증 표시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◇ 인증 도용 사실을 알고도 수입·판매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경우

- (처분강화) 고의로 KS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대해 인증 취소 등 근거 신설(「산표법」 제22조 개정)

현행	◇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◇ 정기심사나 이전심사를 받지 않은 때 ◇ 정기심사, 시판품조사, 현장조사 결과 KS에 현저히 미달할 때 ◇ 현장조사를 거부 방해한 때 ◇ 폐업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
신설	◇ 인증제품을 고의로 KS나 심사기준에 맞지 않게 제조 또는 제공한 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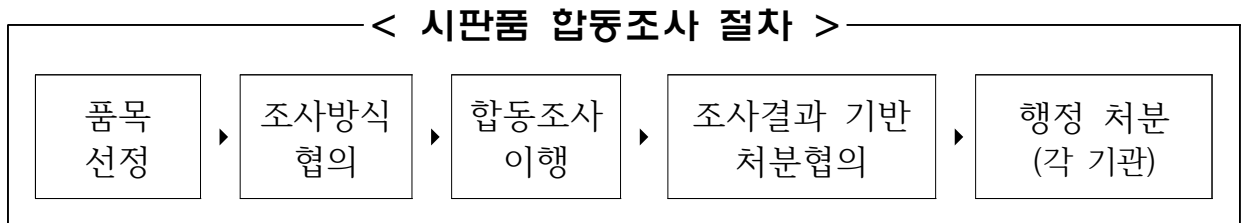
③ 시중 유통 불량제품 근절을 위한 시판품조사 강화

- (효율화) 부적합률이 높은 품목 위주로 시판품조사를 강화하고, 필요시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(「산표법」 제20조 개정)

현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◇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◇ 인증제품 품질저하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
----	---

신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◇ 국가기관, 지자체, 공공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◇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----	--

- (합동조사) 국토부(레미콘 등 건설자재), 조달품질원(B to B제품) 등 관계 부처와 불법 인증제품에 대한 합동조사 활성화



④ 불량 KS인증제품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지정·운영

- (운영목적) 불량 KS인증제품 유통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및 기업지원을 전담할 수 있는 기관 지정·운영(「산표법」 제22조의3 신설)
- (센터지정) 인증기관과 독립성을 가진 기관 대상
- (주요업무) KS인증제품 사후관리, KS인증 기업지원 등 수행
 - (사후관리) 시판품조사를 위한 시료구입 및 관리, 시험의뢰, 불량 제품의 회수사항 이행점검 등 사후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
 - (기업지원) 국내 기업의 KS인증 상담 및 불량 인증제품 신고 접수, 인증기관·심사원 부실심사 신고 등 기업의 KS인증 쏠주기 지원